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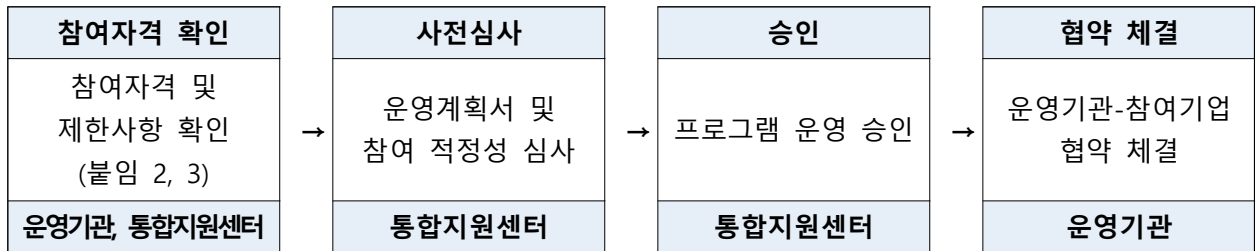
#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(인턴형) 참여기업 모집

## □ 사업목적

-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·경력직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

## □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

- 붙임 2, 3 작성 후 이메일 제출(E-mail. [hyeonjic@djbea.or.kr](mailto:hyeonjic@djbea.or.kr))
- 신청 절차



## □ 지원내용

- 기업, 멘토, 청년 대상 참여 지원금 지급(4주 단위 지급)

구분	인턴형
일 경험	8주 * 주 25시간(정부지원금) / 주 26~40시간(기업부담금)은 승인 후 가능

구분	지급대상	명칭	지급기준		지원금액	비고
			인원	기간	일반	
일경험	기업	지원금	1인	1주	50,000원	
	멘토	수당	1인	1주	37,500원	
	청년	수당	1인	1주	375,000원	주 25시간 기준
		체류지원비	1인	1주	50,000원	

\* 참여청년 출석률 등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참여기업 참여 요건 및 역할

- 역할
  - ① 참여청년 대상 양질의 일경험 제공(직무 기반 과업 부여, 멘토 배정)
  - ② 멘토링 등 참여청년 관리
  - ③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(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)
  - ④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

○ 자격요건

연번	내용
참여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*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법인 등</li> <li>-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</li> <li>-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</li> <li>①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</li> <li>② 「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제도 운영규정」 및 「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</li> <li>③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</li> </ul>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캐블링 및 배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②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란주점, 유희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.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8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</li> <li>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* 및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</li> </ul> </li> <li>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'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표일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</li> </ul> </li> <li>⑥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</li> <li>⑦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`24년~`25년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</li> </ul>

□ 멘토링

-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과 효율적 일경험을 위해 멘토를 선임하여 멘토링 제공
- (선임 기준)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 수행 실무자
  -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\* 임원급 이상(사외이사 포함)은 선임 불가
- (주요 책무)
  -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의 대면 면담 및 멘토링 제공
  - 면담일지 작성 및 제출
  -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

□ 관련 문의사항

-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조현지 책임 ☎ 042-719-8335 ✉ hyeonjc@djbea.or.kr